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사업주

(경유)

제목 「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 신청기간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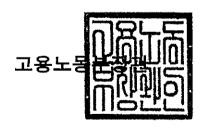
- 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코로나19에 대응하여 '20년 한시 운영중인 「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사 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,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<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>

- (가족돌봄휴가)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0일 (한부모 25일)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
 - * 10일을 초과하는 휴가(연장된 가족돌봄휴가 10일, 한부모근로자 15일)는 '20.12.31.까지 사용가능.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매년 발생
- o (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)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히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 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한도 돌봄비용을 지원('20년 한시 지원)
 - * 구체적인 지원사유는 홈페이지 설명자료 참조
 - (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)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(맞벌이 부부 합산 30일, 최대 150만원),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(최대 100만원) 이내 지원
 - * 1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한 지원은(연장된 휴가에 대한 지원, 최대 5일분) 9월 9일 이후 사용한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지원
 - (대규모 기업·공공기관 근로자) 근로자 1인당10일 이내 지원(맞벌이 부부 합산 20일,최대 100만원)
- o(신청 기간) <u>12.20(일)까지 신청</u>
 -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는 12.1(화)~12.20(일)의 기간에 '가족 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'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
- o (신청 방법) 온라인 신청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
 - *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
- 3.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**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등 돌봄 부담이 가** 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 - 이에 근로자가「가족돌봄휴가」를 적극 활용하고 「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을 받을 수 있도록 **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** 바랍니다.
- 4. 만일,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,

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보도자료 1부, 끝,



주무관 **최은영** 행정사무관 **정승연** 과장 **홍정우**

협조자

시행 여성고용정책과-4582 (2020.11.30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팩스번호 044-202-8054 / elle198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